

코덱스 규정과 친환경농업의 방향 및 과제

이 태 근
(사)흙살림연구소 소장

1. 머리말

한국농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친환경농업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식량자급이라는 엄청난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농업이 우리 국민의 식량을 자급하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두가지 일에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들이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광우병, 구제역을 당하면서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가 농업 본래의 모습보다는 농업과 환경이 어떠한 관계와 순환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업을 걱정하고, 식량자급을 소리쳐 외치는 농업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업이 환경의 중요성을 저버린다면, 농업 스스로 보호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광우병의 위협으로 우리 식습관에 변화가 일고 채식주의가 TV에 보도되고 있으며, 기존 식품산업은 유기농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녹색당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광우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탄받고 있는 공장식 농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제도에 개혁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독일의 농업정책이 기업형 농업에서 가족농 중심으로 바뀌고,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86명, 감염자가 13만6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영국은 카리브해의 섬을 통째로 유기농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의 경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의 국제기준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2001년 1월 26일 법률 제 6378호)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변경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였다.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가 표시신고제에서 인증제로 바뀌고,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통폐합에 따른 지명직 위원 중 3인을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을 부과한 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방법이 지금까지의 품자에서 다른 표시로 바뀌고,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생산기준을 설정하고(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일반 친환경 농산물),

셋째,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기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품질인증기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 재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 절차,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섯째,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여섯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 한계와 향후 과제 중 유기농업 자재 문제를 중심으로 CODEX 유기농산물 생산기준과 생산원칙, 투입자재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규정은 일반재배를 포함하고 있어 엄격하지 않아 CODEX 기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CODEX 유기재배원칙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주된 내용

CODEX에서 이야기하는 유기농업이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유기 생산체계는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생산기준을 기초로 한다. 생물학적, 생태학적이란 용어는 유기 시스템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유기농업은 생물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활동을 포함하는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촉진, 증가시키는 일종의 총체적인 생산관리 체계이다. 유기농업은 외부투입자재의 사용보다는 각 지역에 적합한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경영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천은 화학합성자재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체계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능한 경종적, 생물학적, 기계적 방법의 사용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유기생산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전체 체계내에서의 생물 다양성 증진
- ② 토양생물활성의 증진

- ③ 장기적인 토양비옥도 유지
- ④ 토양에 영양분을 되돌려 주기 위한 동식물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생불가능한 자원이용의 최소화
- ⑤ 지역적으로 조직화된 농업체계속에서 재생가능한 자원이용 의존
- ⑥ 농업에서 기인하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공기, 물, 토양의 건전한 사용의 증진
- ⑦ 모든 생산단계에서 상품의 유기적 성질과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가공방식에 역점을 둔 농산물 취급
- ⑧ 토지경력, 생산된 작물이나 가축의 종류 등과 같은 포장 특유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적절한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서 모든 현존하는 농장에서의 유기생산체계 확립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인증기준결정,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기관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인증의 신청 및 심사절차와 재심사의 신청 및 절차,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7월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 부문에서 바뀐 주된 내용은 인증신청자가 2년 이상 기록한 영농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자에 있어서 유기농산물 생산기준과 일치하게 생산관리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전자 변형농산물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배 시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부산물 비료는 3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는 유기축산에서 생산된 분뇨만 허용하는 것은 CODEX 규정과도 일치할 수 있다.

유기축산물 부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먼저 초식가축은 자가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가축사육계획 두수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한다. 두당 재배면적 확보 기준은 생체 400kg 기준으로 초지 820평, 사료포장 250평이며, 젖소(생체 600kg 기준)는 초지 1250평, 사료포장 400평이고, 면양 및 산양(생체 30kg 기준)의 경우 초지 70평 또는 사료포장 20평이 필요하다. 사료 및 영양관리에서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100%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지만, 2010년 말까지는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반추동물의 경우 85% 이상, 비반추동물의 경우 80% 이상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4. 토양개량과 시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

화학공정이 없고, 관행농법에서 파생된 자재가 아니면, 환경과 인간에 친화성 있는 대부분의 자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동식물성 유기물, 부산물과 축분 및 이들을 퇴비화 한 것, 광물성 비료자원과 광물성 토양개량제, 산업부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농장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사용가능하나, '공장식' 농장에서 나온 축분과 이로 만든 퇴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합사료와 합성첨가제, 합성약품 등으로 관리되는 국내 축산업계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내 유통퇴비 중 축분위주의 퇴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유기자재 등에 대한 공인된 인증위원회가 없는 국내실정에서 유기농업 원료나 자재의 적합성 승인(인증)을 받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생산되는 부산물인 쌀겨와 동식물성 박류, 톱밥 등 대부분 외부에서 유래된 유기자원도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짓고 있다.

더욱 문제가 큰 부분은 광물성 비료로, 국내 부존자원으로는 석회질 자재와 규산질 자재가 대부분이며 비료관리상 그 중요도가 큰 가리질, 인산질 광물자원이 거의 없어 현재에도 국내비료회사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중요한 광물성 비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천연 광물질의 단순한 물리적 가공만이 허용되므로 국내 비료생산업자가 수요가 극히 적은 이들 자재를 생산할지 의문시된다. 산업부산물로 국내에서는 제당산업과 전분가공 공장, 주류 생산회사 및 발효회사에서 상당량 유기성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축산업과 비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부산물도 규격을 정하고 토양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허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CODEX 허용 비료자재와 국내 비료공정규격과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아 이들 자재의 생산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 새로운 자재가 비료로 등록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화학비료 위주의 공정규격을 유기질, 광물성 자원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 비료규격상 무기질 질소, 인산, 가리, 복합비료 중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자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국내법상 유기질 비료의 대부분은 허용 가능하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결정된 토양개량과 시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와 각 자재에 대한 허용 가능 조건이다.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허용 가능 조건 |
|---|---|
|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 유기농업의 부산물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것은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것 |
| · 오줌(가축의 뇨) | |
|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유기질 비료 |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 공인기관의 등록 및 허가된 제품 |
| · 건조된 농장퇴구비, 탈수한 가금퇴구비 | · 유기농업의 부산물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것은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것 |
| · 질소질 구아노 | |
| · 짚, 산야초 | |
|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동 표에서 허용하는 자재만 사용하여야 함 |
|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
|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
| ·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제품 (혈분, 육분, 골분, 깃털분, 키토산 등) | · 도축장의 가공제품은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의 등록 및 허가된 제품 |
|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 합성첨가물이 없는 것 |
| · 해조류 및 해조류 식품 | |
|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부스러기 | · 폐가구 목재 부스러기는 제외 |
| · 나무숯 및 나무재 | |
| · 천연 인광석 | |
| · 칼륨암석, 채굴된 칼륨염 | |
| · 황산가리 |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 |
| · 자연산 탄산칼슘(해조류 퇴적물, 석회석 등) | |
| · 마그네슘 암석 | |
|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
|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천연석고 | |
| · 스틸리지(알콜발효찌꺼기) 및 스틸리지 추출물 | · 암모니아 스틸리지는 제외 |
| · 염화나트륨(소금) | |
| · 인산알루미늄칼슘 | |
| · 미량원소(브롬,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 아연 등) | |
| · 황 | |
| · 자연암석분말, 분쇄석 또는 그 용액 | |
| · 점토 및 불석(Bentonite, Perlite, Zeolite) | |
| ·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벌레) | |
| · 질석(풍화한 흑운모) | |
| · 이탄(泥炭, Peat) | |
| · 피트모스(土炭) | |
|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
| · 석회소다 염화물 | |
| · 사람의 배설물 |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 |
| · 제당산업의 부산물 | |
|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
| · 목초액 | · 임업연구원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 |
|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 · 등록 및 허가된 제품 |
| · 미생물 제제 | · 등록 및 허가된 제품 |

5.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주로 외국의 유기재배 시 이용되는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산이 거의 안되고 있거나 국내법으로 등록되어 유통되는 자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이용되는 동식물성 자재로 살충성분이 있는 것(제충국, 로테론, 구아시아, 님, 담배차), 살균력이 있는 것(프로폴리스, 식초, 소금), 물리적으로 해충을 구제하는 것(젤라틴, 레시틴, 카제인) 등이 포함된다. 자가 제조해서 쓸 수 있는 천연물은 마늘, 양파, 고추 및 약초 등이 허용되고, 천연 식품 첨가물은 거의 대부분 허용된다. 이들 자재는 합성농약에 비해 방제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무기자재로 무기합성물질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자가 제조하여 이용하는 보르도액, 석회유황합제와 기계유, 유황, 황산구리 등이 과수재배에서 전통적으로 허용되는 자재이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해충을 구제하는 암석분말, 규조토, 점토 등도 포함되며, 흰가루병 등에 중탄산나트륨(중조) 등도 허용된다.

미생물 제제로 B.T.제 등은 국내에서도 등록 판매되고 있으나 그 외에 살충, 살균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생물제 등은 거의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입법 고시된 생물농약법을 통해 앞으로 미생물제제의 등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덧을 이용하는 방법인 페로몬 등으로 끈끈이에 유인하는 물리적 방법과 유인약품을 동시에 이용한다. 그 외에 탄산가스와 질소가스 등이 허용되며, 살충비누(칼룸비누)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에 있다. 살균력과 침투력이 있는 에칠알콜이 허용되므로 막걸리, 소주, 맥주 등도 사용 가능하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결정된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와 각 자재에 대한 허용 가능 조건이다.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허용 가능 조건 |
|---------------------------------|-------------------------------|
| 식물과 동물 | |
| • 제충국에서 추출한 제제 | • 천연물질을 추출한 자재 |
| • 데리스(열대공과식물) 제제 | • 천연물질을 추출한 자재 |
| • 쿠아시아 제제 | • 천연물질을 추출한 자재 |
| • 라이아니아 제제 | • 천연물질을 추출한 자재 |
| • 님(Neem) 제제 | • 천연물질을 추출한 자재 |
| • 밀납(프로폴리스) | |
| • 동식물 유지 | |
| • 해조류, 해조류가루, 해조류추출액, 소금과 소금물 | |
| • 아교(젤라틴) |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 |
| • 인지질(레시틴) | |
| • 카제인(유단백질) | |
| • 식초 및 천연산 | |
|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생산물 | |
| • 버섯 추출액 | |
| • 크로렐라의 추출액 | |
|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 천연약초와 한약제, 목초액 | • 목초액은 입업연구원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 |
|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허용 가능 조건 |
|---------------------------------|-----------------------|
| 미네랄 | |
| • 무기화합물(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 |
| • 부르고뉴액 | |
| • 구리염 | |
| • 유황 | |
| • 광물질 분말(맥반석 등) | |
| • 규조토 | |
| • 규산염, 점토(벤토나이트) | |
| • 규산나트륨 | |
| • 중탄산나트륨, 생석회 | |
| • 과망간산 칼륨 | |
| • 탄산칼슘 | |
| • 파라핀유 | |
| • 키토산 | |
|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 | |
| • 미생물 제제(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 • 등록 및 허가된 제품 |
| 기 타 | |
| • 이산화탄소, 질소가스 | |
| • 비누물 | |
| • 에틸알콜 | |
| • 동종요법 및 Ayurvedic 제제 | |
| • 향신료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제, 기피식물 | |
| • 응성불임곤충 | |
| • 기제유제 | |
| 및 | |
| • 성유인물질(페로몬) | |
| • 메타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하여야 함 |

6. 유기농산물 가공 시 허용물질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비중은 기존 식품산업에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유기농 원료의 수입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 유기농 원료의 경우 다른 재료에 비해 수입 과정에서 변질의 염려가 높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 가공시 허용물질에 대한 규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원료부분과 최종제품의 표시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더 중요하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기준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생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마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유기농이라는 표현에 현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의 규정과 같이 그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료와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정직한 유기농업 생산자를 보호를 위해서도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결정된 유기농산물 가공시 허용물질 및 허용 가능 조건이다.

| 사용이 가능한 물질 | 허용 가능 조건 |
|---------------------|---------------------------|
| 비농업 유래의 원재료 | |
| • 탄산칼슘 | |
| • 이산화황 | • 와인제품 |
| • 젖산 | • 발효채소제품 |
| • 이산화탄소 | |
| • 사과산 | |
| • 아스코르빈산 | • 천연의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
| • 천연농축액을 혼합한 토크페롤 | |
| • 레시틴 | • 표백제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것 |
| • 구연산 | • 과일 채소제품 |
| • 주석산나트륨 | • 케익, 과자 |
| • 주석산칼륨 | • 시리얼, 케익, 과자 |
| • 인산제일칼슘 | • 밀가루를 부풀리는데만 사용 |
| • 알긴산 | |
| • 알긴산나트륨 | |
| • 한천 | |
| • 카라긴산 | |
| • 로커스트콩겔 | |
| • 구아검 | |
| 농업유래의 가공보조제 | |
| • 물 | |
| • 염화칼슘 | • 응고제 |
| • 수산화칼슘 | |
| • 황산칼슘 | |
| • 염화마그네슘(또는 nigari) | • 응고제 |
| • 탄산칼륨 | • 응고제 |
| • 이산화탄소 | • 건포도 제조시 건조 |
| • 질소 | |
| • 에틸알콜 | • 용매 |
| • 탄닌산 | • 여과보조제 |
| • 난백알부민 | |
| • 카제인 | |
| • 젤라틴 | |
| • 운모 | |
| • 식물유 | • 광택 또는 이형제 |

| 사용이 가능한 물질 | 허용 가능 조건 |
|--------------|---|
| • 이산화규소 | • 젤과 콜로이드 용액으로 |
| • 활성탄 | |
| • 탈크 | |
| • 벤토나이트 | |
| • 백도토(고령토) | |
| • 규조토 | |
| • 펄라이트 | |
| • 개암나무열매의 껍질 | |
| • 밀납 | • 이형제 |
| • 키나우바왁스 | • 이형제 |
| • 황산 | • 설탕생산시 추출수 pH의 조정 |
| • 수산화나트륨 | • 설탕생산시 pH의 조정 |
| • 주석산과 주석산염 | |
| • 탄산나트륨 | • 설탕 생산 |
| • 나무껍질 성분제제 | |
| • 수산화칼륨 | • 설탕가공을 위한 pH의 조정 |
| • 구연산 | • pH 조정 |
| • 미생물제 및 효소제 | • 유전적으로 변형, 조작된 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생물체 및 효소를 제외하고, 식품가공의 보조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생물제 및 효소제 |

7. 결 론

친환경농업이란, 농업생산에서 농약, 비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 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기농업기술은 주로 일본에서 도입된 효소농법이나 일본의 여러 유기농업 단체들의 유기농업 기술을 재편집한 것이다. 친환경농업을 보급하는 농민단체 또한 자금이나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하여 미생물 판매를 통한 재정 운영을 하여 왔으며, 우리 땅에 적합한 농법의 검증이나 과학적인 실험 없이 막연한 상상력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교육, 보급하여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현장 농민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또한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대형 백화점이나 시장 유통방식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제 유기농업의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법적, 기술적, 제도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고, 한국농업의 장기 발전 방향 및 목

표에 대한 입장 정리 즉,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단체 내부의 유기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사이비 환경농업인을 양성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배척받는 농업이 아니라 진정한 환경농업인을 양성해서 물과 흙과 공기를 살리고, 농업 또한 살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외국의 유기농 생산농가가 실행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과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꿈같은 이야기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20년 전에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유기농업을 목표로 해서 준비한다면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한국 농업의 한 줄기 희망이 환경농업에 있다고 본다면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과 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정부나, 연구자, 민간단체, 환경농산물을 먹는 소비자가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은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